

□ 자기인증 능력 확보 수입자 제작자등 등록 관련

[예시]

1.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하는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사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수입자만 해당한다)

- 수입자의 경우 ISO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되는 차대번호표기배정서 (이하 'WMI')로 자기인증 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ISO 규정에 의하여 WMI코드의 세번째 자리를 '9'\*로 배정받은 경우는 자기인증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500대이하 제작·조립하는 제작자의 경우 ISO규정 (ISO 3780)에 의하여 세번째 자리가 '9'인 국가공통부호(해당국가에서 여러 제작사가 공통으로 사용)를 배정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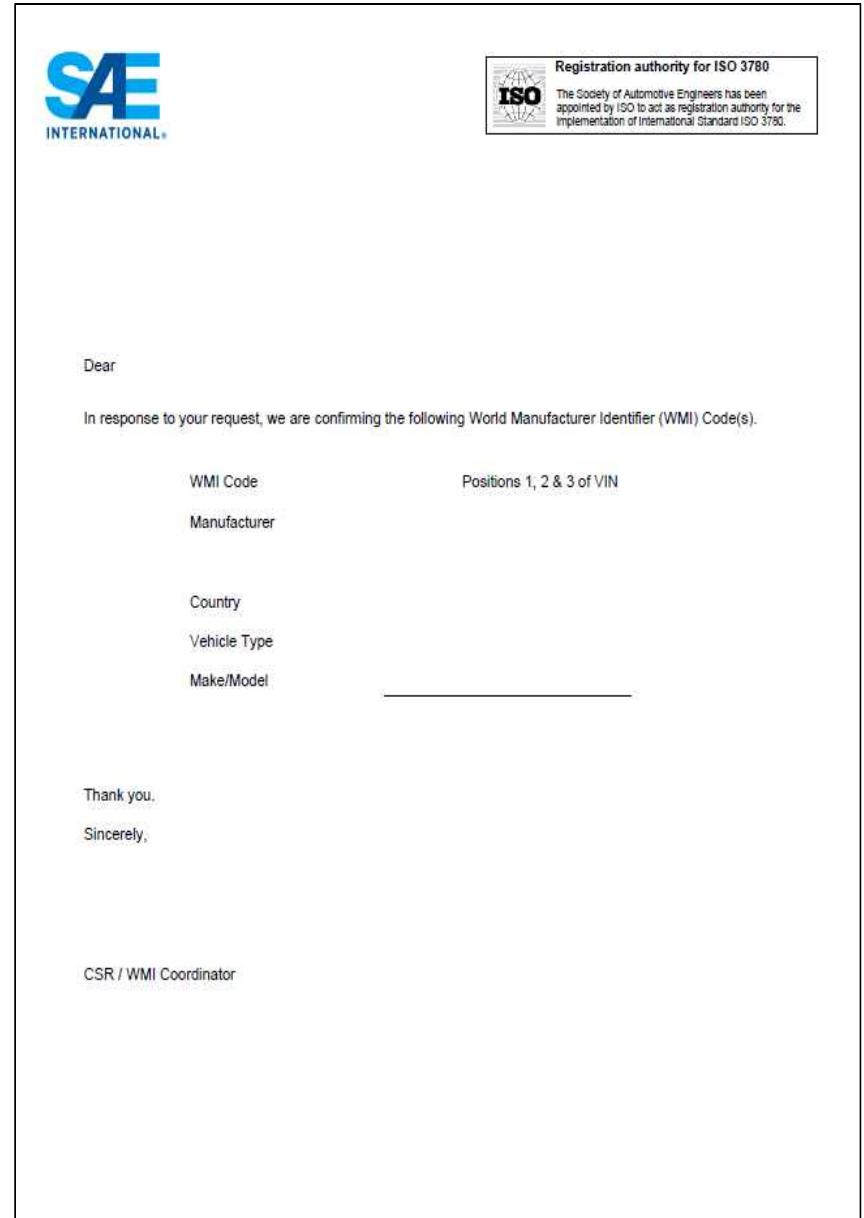
**ISO 3780 5.4.2** The national organization shall use the numerical character "9" in the third position in order to identify a manufacturer producing fewer than 500 vehicles per year.

- ISO 3780에서 WMI(world manufacturer identifier)를 관리하는 국제 기구를 SAE(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발급받은 차대번호표기부호배정서 사본은 SAE에서 발급한 배정서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ISO 3780 4.2** The assigned WMI codes shall be maintained and checked by the international agency specified in Annex A acting under authorization from ISO.

**[Annex A] 'WMI code administration'** The international agency responsible for the maintenance of the WMI codes in accordance with this International Standard is the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SAE).

Information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new WMI codes can be obtained from the WMI coordinator at the following address : Society of Automotive Engineers, Inc. (SAE) ... ..



## 2.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 최초제작자와의 계약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차대번호표기부를 배정받거나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연간 500대 이상 제작하는 ①**외국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어 ②**법 제31조에 따른 제작결합의 시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자(수입자에 한함)

#### ① 최초제작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한다는 내용 포함

- 잘못된 사례 : 대리점 계약서, 딜러 계약서, 판매계약서 등
- 국내 수입사(제작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외국 최초제작자의 대리인 지정을 수락한다는 내용 포함

#### ② 법 제31조의 제작결합 시정에 관한 사항 포함

-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제작결합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문구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문구]

최초제작자 “갑”은 국내대리인 “을”에게 판매한 자동차(이륜자동차) 등이 대한민국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확인한 경우 또는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제작결합 시정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대리인 “을”을 통해 결함내용을 시정조치하여야 하며, 완벽한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부품을 등을 공급하여야 한다. 만약, 국내대리인 “을”이 시정조치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최초제작자 “갑”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교체되는 대리인(최초제작자가 기 지정한 국내대리인을 취소하고 교체하여 대리인을 지정)이 신청하는 경우, 기존 국내대리인이 판매한 자동차(또는 이륜자동차)의 제작결합의 시정 및 사후관리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교체되는 사항 증명 필요)

-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원활한 정비를 위하여 부품 공급(8년 이상) 및 기술지원, 자료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의 별도 양식은 없으나 기본적인 정보(계약자 정보(WMI 포함), 계약이 미치는 지역, 계약기간, 서명자\* 정보 등)가 포함 되어야 합니다.

\* **계약서의 외국 최초제작자 서명자**는 대표자이거나 한국 내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로서, 계약의 권한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계약서는 원문과 국문번역본(**번역공증 필요**)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에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 후 제출)

#### 4. 자주 묻는 질문(Q&A)

① 동일한 국내 수입사가 두 개 이상의 외국 최초제작자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까?

- 네. 두 개 이상의 외국 최초제작자 대리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최초제작자의 대리인 지정 계약기간이 만료(또는 변경)된 경우는?

- 제작자등 등록 변경 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로 외국 최초제작자의 대리인 지정이 해지된 경우는 해당 자동차 자기인증은 성능시험대행자를 통하여 자기인증을 하거나, 대리인으로 재지정(또는 계약기간 만료 전 계약기간 갱신)된 후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서 등의 서류 형식은?

- 별도의 형식은 없습니다. 제출은 원문(원문에 원본대조필 도장 날인)과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하며, 번역에 대한 공증을 하여야합니다.

④ 누가 대리인지정 계약서 등의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까?

-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만이 계약서 등의 서류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단, 위임자가 서명하는 경우, 대표로부터 위임받았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